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11,452,119	12,343,564
일반회계		401,985,313	12,059,559
특별회계		9,466,806	284,004
	기타특별회계	9,466,806	284,004
	상수도특별회계	2,339,583	70,187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256,333	37,69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92,802	26,784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1,138,325	34, 150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특별회계	3,277,243	98,317
	주차장특별회계	516,500	15,49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6,020	1,381

- 제 2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095,380천 원으로 한다.
- 제 4조 기금운용계획서는 별첨 "기금운용계획"과 같다.
-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